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김형모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첫째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셋째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14세기 이후 발달되어 온 영국 구빈법 체계를 집대성한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

민을 특성에 따라 집단화하고 이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처하는 구빈행정의 원칙을 확립하였는데,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근로 능력이 있는 건강한 빈민으로 이들은 구제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작업장으로 보내졌으며, 극소한의 구호가 허용되었다. 둘째, 근로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빈민으로 이들은 구제할 가치가 있는 빈민으로 분류되어 구빈원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았다. 셋째, 빈곤 아동들로 이들은 도제 수습의 기회를 제공받거나 고아원에 수용되었다.¹⁾ 즉, 아동, 장애인, 여성,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생활시설에서 보호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장애인, 여성,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

1)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2013). 사회복지장론(개정3판). 나남. p.59.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의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여성, 노인 등이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인권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1년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설치를 시작으로 인권 보호에 취약할 수 있는 아동, 노인과 가정 내의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본격적으로 설치,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장애 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치가 시작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2001. 12. 15. 개정)에서는 인권 실천을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실무자 역할에 포함하고 있는데 인간 평등, 권익 옹호, 인간 존엄성, 차별 금지, 사회정의, 도덕성, 책임성 등을 기본으로 하여 실천 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의 전문은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

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의 현장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천 현장이며 그 선두에 사회복지사가 있다. 하지만 최근 보육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반인권적 행위로서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사회복지의 발전과 국민 인권, 권리 의식은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이 존재한다. 특히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 가족, 복지서비스 종사자에 의한 학대 사례가 여전히 보고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 준다.

지금까지 급속한 사회발전 속에서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 노력의 의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권리가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